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개정안	비고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항 ~ ④항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항 ~ ④항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수사할 때는 수사기관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을 추가함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항 ~ ⑤항, ⑦항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항 ~ ⑤항, ⑦항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	경찰 외 다

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u>경찰서 유치장</u>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u>수사기관 유치장</u>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른 수사기관 포함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u>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u>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u>검사의 지휘에 의하여</u>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① 구속영장은 <u>사법경찰관리 등(제197조의 사법경찰관리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u>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u>사법경찰관리 등의 입회하에</u> 교도관이 집행한다.	구속영장의 집행은 수사기관이 함. 검사는 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않음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u>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u> ② <u>사법경찰관리는</u>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u>사법경찰관리</u>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u>항 삭제</u> <u>사법경찰관리는</u>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u>사법경찰관리 등</u>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검사는 구속영장 집행권이 없으므로 ①항 삭제.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	제84조(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u>관</u>	구속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의 업무

판장은 <u>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u> 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u>할 경찰서장</u> 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항 ~ ④항 현행과 같음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u>검찰총장</u> 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항 ~ ④항 현행과 같음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u>경찰청장</u> 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의 집행 및 석방의 업무는 수사기관의 업무임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u>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u>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u>사법경찰관리 등이</u>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 삭제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u>검사</u> ,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9. 12. 31.>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u>사법경찰관리 등</u>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검사 규정 삭제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u>검사, 사법경찰관리</u> ,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u>사법경찰관리 등</u> , 법원사무관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검사 규정 삭제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항 ~ ③항 현행과 같음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항 ~ ③항 현행과 같음	경찰서 외 수사기관 포함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u>경찰서 유치장</u>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항 ~ ⑦항 현행과 같음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u>수사기관 유치장</u>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항 ~ ⑦항 현행과 같음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의 관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u>②항 삭제</u>	제2항 삭제
<u><신설></u>	<u>제195조의2(수사의 일반원칙) ①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 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u> <u>② 수사기관은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을 해서는 안되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u> <u>③ 수사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에 정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u> <u>④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u> <u>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u>	헌법 제12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

	전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참고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⑤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⑥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195조의3(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20조를 법률로 명문화함
<신설>	제195조의4(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설>	제195조의5(불이익금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u>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u>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
<u><신설></u>	<u>제195조의6(피의사실 공표 금지)</u> <u>①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u> <u>② 수사기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의 공개는 그 준칙에 따른다.</u>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u>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u> <u>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u>	<u><삭제></u>	제196조 삭제
<u>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u>	<u>제197조(사법경찰관리 등) ① 경위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수사관 및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법경찰관 등’ 이라고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u>	공소청 수사관과 특사경 등 법에 의하여 수사권한을 가진 수사관을 포함시킴.

② <u>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u>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u>경사, 경장, 순경인 사법경찰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미만의 수사관 및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법경찰리 등’이라고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u>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치안감 이상의 계급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사법경찰관</u>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u>사법경찰관</u>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u>사법경찰관</u>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u>자체없이</u>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 신설 ③ 검찰총장 또는 <u>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u>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u>사법경찰관</u>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사법경찰관 등</u>에게 <u>그 대상과 이유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서</u>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u>사법경찰관 등</u>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u>사법경찰관 등</u>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은 이행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 또는 <u>각 지방 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 등</u>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u>사법경찰관 등</u>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시 문서로서 그 대상과 이유를 명시하도록 함. 보완수사 이행기한을 명시한 제3항을 신설함.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용어 정리

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 등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등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 지방 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 등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	
--	---	--

	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u>수사인권보호관에게</u>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u><삭제></u>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으므로 삭제함
제198조(준수사항) ① <u>피의자에 대한</u>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u>사법경찰관</u>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u>사법경찰관</u>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u>항 삭제</u> ① 검사·<u>사법경찰관</u>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u>사법경찰관</u>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에 관해서는 제195조의3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제1항 삭제 그 외 용어 정리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 <u>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u>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u>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u>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 <u>지방공소청장</u>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u>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u>	검사는 수사기관에 석방요구를 하고, 수사기관은 석방의 집행을 함. 용어 정리
<u><신설></u>	제199조의2(입건 전 조사) ① <u>사법경찰관 등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 전 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참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u> ② <u>사법경찰관 등은 전항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 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승인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u> ③ <u>입건 전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

<u><신설></u>	제199조의3(조사의 분류) 조사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 2. 신고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112 신고·방문 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 3. 첩보사건 가. 사법경찰관 등이 대상자, 범죄 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제출한 범죄첩보 사건 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기타 조사 사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을 명문화함
<u><신설></u>	제199조의4(조사사건의 수리) ① 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건 전 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u><신설></u>	제199조의5(첩보사건의 착수) ① 사법경찰관 등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수사부서장 등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사법경찰관 등에게 문서로 조사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착수를 지휘한다. ③ 사법경찰관 등은 소속 수사부서장 등으로부터 조사착수 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99조의6(조사 사건의 이송·통보) 사법경찰관 등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신설>	제199조의7(조사의 보고·지휘·방식 등) ①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사법경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2. 제1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사법경찰관 등은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진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한다.	
<신설>	제199조의8(입건 전 조사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 등은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 전 조사 종결: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3. 입건 전 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및 병합 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해당 수사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 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 탄원,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경찰수사 규칙」 제19조 제2항
<신설>	제199조의9(기록의 관리) ① 수사를 개시한 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2항의 방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u>법으로 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u> <u>② 전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 종결, 입건 전 조사 중지, 공람 후 종결 결정은 불입건 편철서, 불입건 결정서 등의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제199조의6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199조의10(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 등은 조사 결과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u> <u>② 전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진정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u> <u>③ 사법경찰관 등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u>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 사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u>사법경찰관 등</u>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용어 정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직접 체포를 하지 않으므

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항 ~ ⑤항 현행과 같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u>사법경찰관 등은</u>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항 ~ ⑤항 현행과 같음	로 해당 규정 삭제함.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u>사법경찰관</u>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u>사법경찰관 등은</u>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u>사법경찰관 등</u>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용어 정리

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u>사법경찰관 등</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u>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u>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u>검사</u>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u>검사 또는 사법</u>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u>사법경찰관 등</u>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④ <u>검사가</u>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u>아니하여 사법경찰관 등이</u>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u>검사는</u>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용어 정리

<u>경찰관</u>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 <u>사법경찰관</u>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u>사법경찰관 등</u>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 <u>사법경찰관 등</u>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u>사법경찰관 등</u>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용어 정리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u>사법경찰관 등</u>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용어 정리
<u><신설></u>	제200조의7(출석요구) ① <u>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u>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 함.

	·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등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	--

<u><신설></u>	<u>제200조의8(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사법경찰관 등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u>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항 ~ ⑤항 현행과 같음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u>사법경찰관</u> 등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항 ~ ⑤항 현행과 같음	수사-기소분리에 따라 검사는 직접 구속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항 ~ ⑥항 현행과 같음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u>검찰청</u>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항 ~ ⑥항 현행과 같음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u>공소청</u>에 반환한	용어정리

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항 ~ ⑩항 현행과 같음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항 ~ ⑩항 현행과 같음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u>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u> 석방하여야 한다.	제202조(구속기간)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u>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u>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는 수사권이 없음.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병을 인치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함.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u>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u>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송치 후 구속기간) 검사가 <u>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구속된 피의자를</u> 석방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신병 인치가 아니라 사건의 송치여야 함 보완수사요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송치 후 구속기간도 10일로 함. 검사가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의 구속기간'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함. 제202조를 '구속기간'으로, 제203조를 '송치 후 구속기간'으로 표현함.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u>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u>	<u><삭제></u>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구

~~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속기간 연장 필요성이 없음.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u>사법경찰관 등</u>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용어 정리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u>사법경찰관 등</u>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용어 정리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u><삭제></u>	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보고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u>견</u>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용어 정리

<u>사 또는 사법경찰관리</u>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u>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u>사법경찰관리가</u>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u>사법경찰관 등이</u>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u>사법경찰관 등</u>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u>사법경찰관 등이</u>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u>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u>사법경찰관 등이</u>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용어 정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항 ~ ⑫항 현행과 같음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u>검찰청</u>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u>사법경찰관 등</u>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항 ~ ⑫항 현행과 같음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u>공소청</u>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용어 정리

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20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 제6항을 준용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중) ① <u>검사는</u>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중을 할 수 있다.~~ <u>② 사법경찰관이</u>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중을 할 수 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중) ① <u>항</u> 삭제~~ <u>사법경찰관 등은</u>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중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제1항 삭제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u>검사는</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u>사법경찰관 등은</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용어 정리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u>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u>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u>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u>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u>검사가</u>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 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u>사법경찰관 등</u>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u>사법경찰관 등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u>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u>사법경찰관 등이</u>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	--	--

⑥ <u>검사는</u>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u>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u>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u> ⑦항 ~ ⑨항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u>사법경찰관 등</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u>사법경찰관 등은</u>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항 ~ ⑨항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15조의3(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u> <u>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u>③ 제1항, 제2항의 심문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도 신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u>사법경찰관 등</u>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 등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등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u>검사,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u>사법경찰관 등</u>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u>검사는</u>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u>검사가</u>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u>검사의 소속 검찰청</u>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u>검사는</u>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u>사법경찰관 등</u>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u>검사의 승인을 받아</u>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u>사법경찰관 등이</u>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u>사법경찰관 등의 소속 수사기관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u>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u>사법경찰관 등은</u>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u>④항 삭제</u>	수사-기소 분리 제4항 삭제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u>사법경찰관 등</u>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영장 지휘를 하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 삭제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 ~~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u>사법경찰관 등</u>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u>사법경찰관 등</u>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u>사법경찰관 등</u>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용어 정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항 ~ ⑥항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u>사법경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u>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항 ~ ⑥항 현행과 같음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므로 증인신문의 청구는 사법경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하는 것으로 변경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u>검사는</u>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u>사법경찰관 등</u>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u>검사에</u> <u>게 신청하고, 검사는</u>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	감정유치는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개정

	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의5(<u>사법경찰관</u>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u>사법경찰관</u>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u>사법경찰관</u>은 그 검사 소속의 <u>지방검찰청</u> 소재지를 관할하는 <u>고등검찰청</u>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u>고등검찰청</u>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u>고등검찰청 검사장</u>이 위촉한다. ④ <u>사법경찰관</u>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의5(<u>사법경찰관 등이</u>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u>사법경찰관 등</u>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u>사법경찰관 등</u>은 그 검사 소속의 <u>지방공소청</u> 소재지를 관할하는 <u>광역공소청</u>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u>광역공소청</u>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u>광역공소청 장</u>이 위촉한다. ④ <u>사법경찰관 등</u>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용어 정리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 검사</u>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u>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u>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u>사법경찰관 등이</u>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u>항 삭제</u>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므로 제3항 삭제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에게 하여야 한다. 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u>사법경찰관 등</u>에게 하여야 한다. ② <u>사법경찰관 등</u>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	용어 정리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삭제></u>	수사기관이 수사를 완료하여 사건 송치 여부를 정하게 되므로 본 규정은 삭제
제241조(피의자신문)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u>사법경찰관 등</u> 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u>사법경찰관 등</u> 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용어 정리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u>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u> 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u>사법경찰관 등</u> 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으므로 그에 맞게 변경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u>사법경찰관 등</u> 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u>사법경찰관 등</u> 이 이를 지정할 수 있	용어 정리

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u>사법경찰관 등</u>의 동의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u>사법경찰관 등</u>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u><신설></u>	<u>제243조의3(변호인의 메모 보장)</u> ① <u>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신문 등 조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기로 메모(노트북·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u> ② 제1항은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 권보호 규칙」 제32조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함
<u><신설></u>	<u>제243조의4(변호사·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별도의 접견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경찰 수사에 관한 인 권보 규칙」 제33조
<u><신설></u>	<u>제243조의5(변호인에 대한 수사 등 진행상황 통지) 사법경찰관 등은 변호인이 수사결과를 비롯한</u>	「경찰 수사에 관한 인 권보호 규

	수사 등 진행상황 통지를 희망하는 경우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변호인이 요청한 방법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칙」 제34조 제2항
<신설>	제243조의6(심야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 등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수사인권보호관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설>	제243조의7(장시간 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 등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u>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u>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u> <u>2. 제243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② 사법경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u>③ 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규정」 제22조
<u><신설></u>	<u>제243조의8(휴식시간 부여) ① 사법경찰관 등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u> <u>② 사법경찰관 등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u> <u>③ 사법경찰관 등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u>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u>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u>영상녹화할 수 있다.</u>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 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 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 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 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 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 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 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u>영상녹화 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 라 한 다)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미리 영 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 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 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 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 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 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피의자진술 에 대한 영 상녹화를 의 무화함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를 신 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 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 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 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u>사법경찰관 등</u>은 피의자를 신 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 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 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u>사법경찰관 등</u>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용어 정리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u>사법경찰관 등</u>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용어 정리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u>사법경찰관 등</u>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어 정리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u>사법경찰관 등이</u>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u>검사는</u> <u>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u>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u>검사는</u>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u>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에 관한</u>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u>사법경찰관 등은</u>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용어 정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u>검사는</u>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u>검사는</u>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u>검사</u>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u>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u>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u>사법경찰관 등은</u>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u>사법경찰관 등은</u>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u>사법경찰관 등의</u>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u>그 사법경찰관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u>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	용어 정리

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 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사법경찰관 등 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용어 정리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 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 등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 등 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 등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 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 등 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u>고발인을 제외한다</u>)은 해당 <u>사법경찰관</u>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u>사법경찰관</u>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u>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등</u>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u>사법경찰관 등</u>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위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를 포함함 용어 정리
<u>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u>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u>사법경찰관</u>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u>사법경찰관</u>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u>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u>	<u>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u> ①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u>사법경찰관 등</u>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u>사법경찰관 등</u>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u>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수사기관과 다른 수사기관 또는 해당 수사기관의 상급부서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u> ③ <u>사법경찰관 등</u>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재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2항 신설 용어 정리
<u>제245조의9(검찰청 직원)</u>① <u>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u> ② <u>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u> ③ <u>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u> ④ <u>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u>	<u><삭제></u>	수사-기소 분리 에 따라 필요성 없으므로 삭제

~~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u>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u>~~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del>④항 ~ ⑥항 삭제</del>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삭제 (제2항, 4항, 5항, 6항 삭제) 특사경 수사 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사경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

<u><신설></u>	<u>제245조의11(고소인 등의 검사 면담신청) ①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면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를 면담할 수 있다.</u> <u>② 범죄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등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위하여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면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피의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u> <u>③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u> <u>④ 검사는 제1항, 제2항의 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제197조의2에 의한 보완수사요구, 제245조의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을 수사기관에 할 수 있다.</u>	검사에게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직접 대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함.
<u><신설></u>	<u>제245조의12(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 등과 상담하거나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u> <u>②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u>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u><신설></u>	<u>제245조의13(범죄피해자에 대한</u>	범죄피해자

	정보 제공 등) ①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법 제8조의2
<u><신설></u>	제245조의14(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한 진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u><신설></u>	제245조의15(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 스토킹범죄 피해자, 장애인학대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사법경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관 등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사법경찰관 등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u><신설></u>	제245조의16(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최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2.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4.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u><신설></u>	제245조의17(19세 미만 피해자 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사법경찰관 등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등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법경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사법경찰관 등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4조의2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u>〈신설〉</u>	제245조의18(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① 사법경찰관 등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사법경찰관 등은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법경찰관 등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 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사법경찰관 등이 서명 날인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사법경찰관 등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침」 제15조
--	---	-----------------

	정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사법경찰관 등은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제245조의19(수사심의위원회) 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수사기관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수사기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말한다)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적정성 통제 등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함.

	한다. 이 경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245조의20(수사심의의 신청) 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의 적법성 또는 적정성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기 전,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심의 대상 사건의 관할 수사기관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u><신설></u>	제245조의21(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사법경찰관 등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각 수사기관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 등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 등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검사에게) 하는 이의신청에 더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u>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 등은 그 결정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 <u>④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 등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 또는 제4항에서 해당 사법경찰관 등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가 신청되는 경우 사법경찰관 등은 지체없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신설>	<u>제245조의22(수사인권보호관)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u> <u>② 각 수사기관은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각 수사기관의 부서장에게 인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된 수사기관의 부서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수사관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u>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

	④ 제3항의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수사심의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사인권보호관은 사법경찰관 등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수사기관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 수사기관장이 수사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6조(타관송치)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u>검찰청</u> 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u>검찰청</u>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u>공소청</u> 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u>공소청</u>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u>검사가</u>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u>공소제기</u>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u>사법경찰관 등이</u>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u>송치</u>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고소, 고발 사건은 3개월 내 수사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함.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 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u>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를 받았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u>	수사-기소 분리의 체계 상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았으나

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u>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공소불지기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로 한정함. 수사기관에 의한 불송치의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불송치 결정 이유를 고소,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제260조(재정신청) ① <u>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u>지방검찰청</u> 소재지를 관할하는 <u>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u>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u>「검찰청법」 제10조</u>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60조(재정신청) ① <u>고소인, 고발인 또는 범죄피해자</u>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u>지방공소청</u> 소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u>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u>「공소청법」 제57조</u>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권자 외에 고발인, 범죄피해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재정신청기한은 90일 내로 함 국선변호사인 선정(제5항) 용어 정리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항 신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신청인이 청구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등의 처리)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장등의 처리)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으로 함 용어 정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	제262조(심리와 결정)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제3항 신설 용어 정리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항 신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⑥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제262조의5(공소유지번호사의 지정 등) ① 법원이 제262조 제2항	재정신청사건에서 공소

	<u>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호사(이하 “공소유지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u> <u>③ 공소유지 지정변호사의 자격, 임명 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유지변호사의 지정 제도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u>④ 재판장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판준비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19세 미만인 사람</u> <u>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u> <u>3. 그 밖에 재판장이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u>⑤ 재판장은 제4항의 공판준비기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u>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자들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규정을 신설함.

	<u>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u> <u>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공판준비기일 전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u>⑦ 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문사항에 관하여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신문사항·신문방법·신문순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u>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 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 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u>③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 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u>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화를 위해 증인신문 절차 외 피해자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문화 함.

회한 것으로 본다.	<u>별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및 그 밖에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④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u> <u>⑤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에게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u>⑥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청구한 피해자 등의 의견 중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u>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피해자 기록 열람, 등사 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판장이 열람등사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일시 유보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보류기간과 재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 유보하는 결정의 서면에는 그 보류기간과 재신청이 가능한 요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u>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u>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신청이 가능한 요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기록 열람 등사 불허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
<u><신설></u>	<u>제296조의3(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u>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u>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u> <u>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는 제1항의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u> <u>1.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힌 범죄</u> <u>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u> <u>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범죄</u> <u>③ 제1항,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u>	에 관한 사항 등을 판결 전 조사하여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	---

	<u>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u>④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u> <u>⑤ 법원은 제2항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중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은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u>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봉족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 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봉족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 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u>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을 제한하여야 한다.</u>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변론과 신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u><신설></u>	<u>제299조의2(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u>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변론과 신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u>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항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u> <u>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u> <u>2.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때</u> <u>④ 제3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u> <u>⑤ 피해자는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⑥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u>	
--	--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u>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u>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u>검사 이외의</u>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제312조(사법경찰관 등의 조서 등) ① <u>항 삭제</u> ② 삭제 ③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u>수사기관</u>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u>사법경찰관 등</u>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u>제3항, 제4항의 규정</u>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u>수사기관</u>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으므로 제1항 삭제. 그 외 용어 정리
---	--	---

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 검사가 지휘한다.	용어 정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공소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용어 정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공소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용어 정리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용어 정리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용어 정리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	용어 정리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